

지주회사제도의 효율적 운용 방향



이 동 규
공정위 독점정책과장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기본적인 설립요건은 기업경영에 대한 내·외부의 감시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어 경제력집중의 폐해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해소될 수 있을 때까지는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현행 경제력집중 억제원칙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지주회사가 기업구조조정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1. 시

지주회사란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공정거래법상으로는 당해 회사가 보유하는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50% 이상일 경우 지주회사로 판정한다.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경영·관리 외에 다른 사업을 영위하지 않을 경우 순수지주회사(pure holding company)라고 하고, 다른 사업도 영위할 경우 사업지주회사(operating holding company)라고 부르고 있다.

2. 지주회사의 순기능과 역기능

지주회사는 통상 기업의 경영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유용한 기업조직의 형태라고 한다. 지주회사는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가 수행하기 어려운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담당할 수 있고 유사계열사를 통합관리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제고할 수 있다고 한다. 다수 사업부문을 분사화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비주력 사업부문을 용이하게 분리매각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또한, 기업의 소유·지배구조 측면에서 보면 계열사간 복잡한 출자관계로 얽혀있는 현재의 재벌구조와 달리 지주회사를 중심으로 단순한 소유구조를 가짐으로써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측면도 있다. 이와 같이 지주회사는 기업

구조조정과 소유·지배구조 측면에서의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투자자로부터의 자본유치에도 유리하다.

반면, 지주회사는 소액자본으로 다수 기업을 용이하게 지배할 수 있어 경제력집중을 급속히 심화시킬 우려도 있다. 예컨대,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부채비율이 각각 200%이고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30%라고 가정할 경우 지주회사는 100억원의 자본으로 자산 300억원 규모의 자회사를 최대 10개까지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이러한 지주회사를 50%의 지분율로 지배하는 대주주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는 50억 원을 출자하여 자산 300억원 규모의 지주회사를 거느리고 다시 지주회사를 통하여 10개의 자회사를 지배함으로써 자산규모가 총 3,300억원에 달하는 거대그룹을 지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자회사가 다시 다른 회사(손자회사)를 지배할 경우에는 그 지배범위는 더욱더 늘어나게 된다. 결국 대주주는 적은 자본으로 과도한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소수주주의 권리침해 가능성도 그만큼 더 커지게 될 수 있다.

● 지주회사의 허용 배경

이와 같이 지주회사는 순기능도 있으나 대규모 기업집단에 의한 경제력집중문제가 심각한 우리 경제의 현실에서는 역기능이 크다고 하겠다. 이러한 문제인식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1987년 4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일련의 경제력집중 억제시책과 함께 지주회사의 설립금지제도를 도입하였다. 다만, 법률에 의해 설립되거나 외국인 투자사업 영위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지주회사를 허용하였다. 동 제도 시행 이

후 총 21개의 지주회사가 시정명령 등을 통해 정리되고 외국인투자사업 관련 지주회사로서 2개사가 예외인정되었다.

그러나, 1997년말 IMF경제위기가 도래한 이후 기업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이 시급히 요구되면서 지주회사의 허용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지주회사가 가지는 외자유치상의 장점, 비주력사업의 분리매각 촉진 등 구조조정 차원의 순기능이 부각되었으며 OECD, IBRD 등에서도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구조조정 촉진 등을 위해 지주회사제도의 도입을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주회사가 기업구조조정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되 경제력집중의 폐해는 방지될 수 있도록 1999년 4월 지주회사 설립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게 된 것이다.

●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제도 운용 내용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제도는 지주회사가 경제력집중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행위제한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첫째,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하였다. 지주회사가 부채를 동원하여 과도하게 자회사를 확장해 나가는 행위를 억제하기 위함이다. 둘째, 지주회사는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소유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지주회사가 적은 자본으로 다수 회사를 지배해 나가는 행위를 억제하는데 목적이 있다. 다만, 지주회사가 허용되는 시점인 1999년 4월 1일 현재 주권상장된 법인을 자회사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30% 이상 소유할 수 있도록 의무를 완화하였다. 이미 상장되어 소유분산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기업의 경우 자회사로 편입하여 지분율요건을 맞추는 데 과도한 출자부담이 발생

하므로 이를 완화해주기 위해서다. 셋째, 지주회사는 자회사 이외의 국내회사 주식을 지배목적으로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지주회사의 소유구조를 투명하게 하고 지주회사가 지배주주의 계열확장 수단으로 이용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넷째, 금융지주회사는 비금융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고 일반지주회사는 금융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결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다만,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금융업과 밀접한 관련있는 회사, 예컨대 금융업과 관련된 조사·연구영역의 수행, 전산관리업무, 자산관리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업은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원칙적으로 손자회사의 소유를 금지하였다. 다만, 자회사의 사업내용과 밀접한 관련있는 회사와 당해 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의 주식은 소유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였다.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예외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손자회사의 범위는 당해 자회사의 생산제품을 판매·유지·관리·보수하는 회사, 당해 자회사의 생산제품을 주요 원재료로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회사, 당해 자회사에게 원재료를 공급하는 회사 등으로 제한하였다. 여섯째, 30대 기업집단의 동일인 또는 특수관계인이 지주회사를 설립할 경우 지주회사와 자회사간 채무보증, 지주회사와 계열사간 채무보증, 자회사와 계열사간 채무보증 및 자회사간 채무보증 등을 사전에 해소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지주회사가 이러한 행위제한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시정명령 등의 제재조치가 부과된다.

한편, 기업들이 분사화 과정에서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행위제한의무에 대한 유예기간을 부여함으로써 기업들이 원활하게 분사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회사가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회사에 현물출자하고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부채비율 제한의무에 대하여 1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자회사 지분을 제한과 자회사 외의 지배목적 주식소유 금지의무에 대하여는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였다. 또한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될 당시에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자회사의 사업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없더라도 2년간 소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공정위에 신고하도록 하였다.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설립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자산증감 등의 사유로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지주회사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주식소유현황, 재무상황 등 운용상황에 대하여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한편, 지주회사는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이중과세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1999년말 법인세법을 개정하여 이를 조정하였다. 공정위에 신고된 지주회사에 한하여 지주회사가 80%를 초과하여 출자한 자회사에 대하여는 배당소득의 90%를 익금 불산입하고 50% 이상 ~ 80% 이하를 출자한 자회사에 대하여는 배당소득의 60%를 익금 불산입하도록 하였다. 한편, 자회사가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인 경우에는 30%를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에는 배당소득의 90%를 익금 불산입하고 30%를 소유한 경우에는 배당소득의 60%를 익금 불산입하도록 하였다.

5. 최근 지주회사 설립 동향

1999년 4월 지주회사가 설립 허용된 이후 현재까지 총 8개의 지주회사가 설립 또는 전환신고되었다. C&M커뮤니케이션(주), SK엔론(주), (유)KIG홀딩스, 대한석소공업(주), (주)SDN, (주)온디미어 등 6개사는 이미 신고수리되었고 (주)동서, (주)화성사 등 2개사는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다.

최근 설립·전환된 지주회사들은 대부분 분사화, 핵심역량으로의 집중, 외자유치 등 기업구조 조정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2000년 8월말 현재 지주회사가 유치한 외자금액은 453백만불에 달하고 있다. 지주회사의 형태로 보면 주로 순주주회사 형태로 설립되고 있으나 사업지주회사의 형태로 설립되는 경우도 있다.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은 주로 주식취득, 현물출자 등에 의한 전환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그동안 중견기업들이 주로 지주회사를 설립해 왔으나 최근 30대 집단의 설립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SK그룹은 미국의 엔론사와 합작하여 도시가스분야 지주회사인 SK엔론(주)를 설립하였고 동양그룹은 기존 계열사를 사업분야별 지주회사체제로 정비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LG 그룹은 2003년까지 단계적으로 그룹 전체를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삼성물산도 분사화 등을 통해 2005년까지 100개의 자회사를 지주회사로 둔 지주회사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와 같이 최근 재계의 지주회사 설립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은 IMF경제위기 이후 기업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지주회사가 가지는 경영효율성, 외자유치, 전략산업으로의 집중 등 장점을 활용하려는 기업이 증가하는 가운데 지주

회사에 대한 세제지원이 도입되는 등 제도적 여건이 마련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소유·지배구조를 모색하는 대기업집단도 등장하고 있다.

6. 지주회사제도의 효율적 운용 방향

지주회사 설립이 허용된 이후 재계에서는 현행 지주회사 설립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과 함께 조속히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지주회사가 가지는 여러 가지 장점들을 기업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현단계에서 지주회사 설립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집단에 의한 경제력집중이 심각하고 특히, 재벌총수가 적은 자본으로 과도한 지배권을 행사하는 왜곡된 소유·지배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주회사의 설립요건을 완화할 경우 경제력집중과 소유·지배구조의 왜곡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기본적인 설립요건은 기업경영에 대한 내·외부의 감시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어 경제력집중의 폐해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해소될 수 있을 때까지는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현행 경제력집중 억제원칙의 틀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지주회사가 기업구조조정 수단으로 원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장애요인은 조속히 제거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제도 보안을 위하여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다.

우선 1999년 4월 1일 이전에 상장된 자회사에 대하여만 자회사지분율요건을 30%로 완화하도록 한 예외규정을 1999년 4월 1일 이후라도 지

주회사가 설립되기 전에 상장된 자회사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기존 상장회사를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하는 데 따르는 지주회사의 과도한 출자부담은 자회사가 지주회사 설립 전에 상장되었다면 구체적인 상장시점에 관계없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또한 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에 대하여는 동일하게 자회사지분율 요건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현재 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은 증권거래법, 세법 등에서 동일하게 규율되고 있고 실제로도 자회사 편입에 따른 출자부담이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둘째, 지주회사가 현물출자 외에 회사분할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부채비율 제한, 자회사 지분율 제한 등 행위제한의무에 대한 유예기간을 동일하게 부여하기로 하였다. 1998년말 상법개정을 통해 새로 도입된 회사분할제도가 기업들의 분사화 수단으로 주로 이용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셋째, 30대 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주식의 취득

등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경우 출자총액제한규정에 대한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현행 규정에서는 출자총액제한규정의 적용을 받는 30대 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되기 위하여는 주식취득과정에서 순자산의 25%를 초과하는 시점부터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시점인 당해 사업연도말까지 항상 출자총액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넷째,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벤처기업을 주로 자회사로 소유하는 벤처지주회사에 대하여는 자회사지분율요건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를 도입하였다. 벤처기업이 기존 사업 부문을 분사화하여 매각하거나 핵심역량 배양을 위하여 관련있는 벤처기업들을 인수하여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는데 지주회사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 경우 지주회사는 신규 벤처기업을 발굴하여 지원(incubating)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거나 벤처산업 내의 M&A 주체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공정**



용어풀이

지주회사(持株會社)

지배를 목적으로 타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광의로는 타회사 주식 소유 이외에 다른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지주회사와 주식 소유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순수지주회사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임. 우리나라 대규모기업집단의 핵심기업들은 대부분 동일 기업집단 내 타계열회사의 주식을 다량 보유하여 사실상의 사업지주회사 성격을 갖고 있음.